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적인 운용과 대 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대전에 이어 창원에서 그 지역의 언론계·학계법조계·사회단체 등 각계인사를 초청, 지방토론회를 개최하였다. 1994년 6월 24일 창원 국제관광호텔에서 열린 경남지방토론회에서는 권오곤 위원(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의 「현행 언론중재제도와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다음은 주제논문과 토론내용을 초록한 것이다………편집자 주

현행 언론중재제도와 앞으로의 방향

권오곤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언론기본법(1981년 1월 1일 시행)에 의하여 정정보도청구권 및 언론중재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도 어언 14년이 된다. 언론기본법은 그 정당성에 관한 논의 끝에 1987년도에 결국 폐지되고 말았지만, 정정보도청구권과 언론중재제도는 약간의 조문수정만이 가해진 채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간물법」)이라고 약칭한다), 방송법 및 종합유선방송법 등 개별법률에 그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동안 언론중재를 통하여 그 숫자의 다과를 불문하고 언론에 의한 침해로부터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도모한 것, 그리고 그와 같은 정정보도청구권과 언론중재제도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 때문에 언론사 나름대로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난 14년간의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회고는 흡족할 만한 수준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 필자의 솔직한 의견이다. 언론중재제도가 지난 14년간 흡족할 만큼 이용되지 않은 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본다. 첫째로 들 수 있는 것이 제도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이다.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본질이 이른바 반론권으로서, 일종의 언론에의 접근권(access right to mass media)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정보도」라는 용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로 인하여, 정정보도청구권은 마치 언론의 「들린」 보도에 대하여 「정정」을 구하는 권리증으로 이해되어 왔고, 이 때문에 국민들이 이 제도의 이용을 주저하여 온 면이 없지 않다. 둘째로 정정보도청구권과 언론중재제도 자체에 대한 언론사의 거부감이다.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언론보도의 정확성이나 공정성의 문제를 언론사 스스로의 자율적인 규제에 맡기지 아니하고 타율적으로 규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언론중재위원회 기능의 미비를 들 수 있다. 일부 언론사에서 언론중재위원회를 언론탄압기구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고 하듯이, 일반국민들 중에는 언론중재위원회가 마치 언론보도에 대한 모든 불만을 일거에 해결해 주는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정작 언론중재위원회가 하는 언론중재는 엄밀한 의미의 중재(arbitration)가 아니라 조정(mediation)인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임의적인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 스스로는 달리 어떻게 해 볼 방도가 없는 무기력한 기관이다. 지난 14년간의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이러한 비관적 회고에 입각하여, 그 동안 정정보도청구권과 언론중재제도의 앞으로의 방향에 관하여 수 차례의 세미나 등이 개최된 바 있고,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취합된 의견을 종합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개선안을 마련한 바도 있다. 정간물법이 반론권제도를 도입하면서도, 반론권이라는 용어 대신에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마치 위 조문이 민법에서 말하는 정정보도청구권을 규정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되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실제 중재신청사건의 대부분은 반론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보도를 구하는 것이었으며, 중재위원회의 실무처리에 있어서도 그러한 현실을 도외시할 수 없었고, 피신청인인 언론사들 역시 이를 승인하는 태도로 나오게 된 것이다. 따라서, 개선안에서는 반론권으로서의 권리의 성질을 분명히 하면서, 용어의 어감이나 일반인への 친숙도를 고려하고, 이른바 보충적 반론권도 포함하여야 될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용어를 반론보도청구권(반론권)으로 변경하게 된 것이다. 개선안은 위와 같이 용어를 반론보도청구권으로 통일하는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하여 정간물법상의 반론보도청구뿐만 아니라 민법상의정정보도청구에 대하여까지도 중재기능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중재위원회의 실무와 법률규정과의 괴리가 해소될 수 있게 되었고, 중재위원회가 언론피해의 구제방안에 대하여 진일보하여, 권리구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행법상 중재위원회의 중재결과, 실질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는 ① 당사자간에 임의적인 합의가 성립되는 경우 및 ②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불출석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등 두 가지 뿐이다. 실제의 언론중재에 있어 언론사측에서 성의를 보이지 아니하거나 신청인이 과도한 요구를 함으로써 조정예 응하지 아니한 경우, 특히 언론사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에도 중재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강제조치를 취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 개선안은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실질적인 중재권한을 부여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중재결정, 이른바 직권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선안은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현행 정정보도청구권과 언론중재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정보도청구라는 용어를 반론보도청구로 변경하여 반론권으로서의 본질을 명백히 하는 한편, 언론중재위원회가 위와 같은 반론권뿐만 아니라 종전부터 민법 등에 의하여 인정되어오던 정정보도청구의 문제까지 다룰 수 있도록 한 조치는 획기적인 것으로서 이에 찬동한다. 언론사로서는 반론보도라는 용어와 그 의미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권의 경우보다 거부감이 더할 수도 있겠으나, 언론침해에 대한 피해구제를 더욱 넓히고, 정확·공정한 보도를 통하여 다양한 견해의 조화를 도모하는 민주사회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를 과감히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 서울대 법대, 동 대학원법학과 미국 하버드법대(LL.M)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형사지법 판사, 대구고법판사,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 · 기획
담당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현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